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(제 회)	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돌봄시간 연장(19→20시),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의무 탑승 시행
(‘22.11.27)등에 따른 돌봄 부담 해소 및 돌봄 질 제고 하기 위한 인력
추가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법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개정하여 종사자
추가 배치 사업 근거 마련(안 [별표14]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에 반영,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별표 14 제1호 중 지역아동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역 아동 센터	아동 30명 이상	1명					1명 (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)		3명 (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)							
	아동 3 0명 미만 2 5명 이상	1명							2명							
	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	1명							1명							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4]

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·수 및 배치기준(제52조 관련)

지역 아 동 센 터	아동 30명 이상	1명					1명 (아동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)		3명 (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)						
	아동 30명 미만 25명 이상	1명							2명						
	아동 25명 미만 10명 이상	1 명							1명					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361